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 정

사 건 2021카단50238 가압류이의
채 권 자 한국게이츠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3
대표자 청산인 미합중국인 데이비드 위스니우스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채 무 자

1. 김태현
2. 송인환
3. 유명재
4. 장선호
5. 노길현
6. 황해원
7. 김상원



8. 이성호

9. 홍성복

10. 김동식

11. 조양목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이량

주 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0카단52829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2. 30.에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주문과 같다.

채무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3 소재 공장 부지에서 자동차산업 및 기타 산업용동력전달벨트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6. 25.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였고, 현재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

나. 채권자는 주주총회 해산 결의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와 희망퇴직 보상금 규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채권자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채권자는 해산 및 청산 절차의 일환으로 채무자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채무자들은 노조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채권자로부터 2020. 8. 1.자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람들이다.

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포함한 해고근로자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를 상대로 하여 이들이 채권자의 해산 및 이 사건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권자의 해산 및 청산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11. 20. 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 법원 2020카합 5196, 이하 '1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채권자의 소재지인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3 소재 공장부지에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라
2. 채무자¹⁾들은,
 - 가. 채권자가 해산 및 청산을 완료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공장부지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들이 위 공장부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한편, 위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들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하였고, 이 법원은 2021. 2. 17. 위 채무자들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사무실까지의 통행로, 노조사무실, 인접 화장실에 대한 출입금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1차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20카합5338).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0카합5196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1. 20. 채무자들에 대하여 한 가처분 결정 중 아래 부분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가. 채무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채권자의 소재지인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3 소재 공장부지에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라.
 - 나. 채무자들은,
 - 1) 채권자가 해산 및 청산을 완료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공장부지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부해1550 / 부노248 병합 사건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위 공장부지 정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과 위 노조사무실 및 위 노조사무실과 가장 근접한 화장실에서의 출입은 제외한다).
 - 2) 채권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들이 위 공장부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채권자는 1차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자들의 지속적인 업무 방해가 이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1. 2. 17. 위 채무자들이 1차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의 거래처 차

1)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각 하하였다. 이하 각 1차, 2차 가처분결정 주문상에서의 채무자는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의 채무자를 의미한다.





량이 공장부지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거나 채권자의 직원이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부지에서 나가려고 할 때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고 트렁크를 열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채권자의 해산 및 청산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채권자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20카합5332, 이하 '2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스스로 또는 소속 조합원 등을 포함한 제3자로 하여금,
 - 가. 채권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각 대리인, 채권자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채권자로부터 청산업무를 위탁받은 당사자가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3 소재 채권자의 공장 부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채권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각 대리인, 채권자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채권자로부터 청산업무를 위탁받은 당사자가 채권자의 청산 및 공장매각 업무를 위하여 차량, 기계, 기구, 재료, 비품 등을 위 공장부지에 반입하거나 위 공장부지로부터 반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위 나항 기재 사람들과 각 사람들이 탑승한 차량이 위 공장부지에 출입할 때 이를 제지, 수색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채무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은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채권자는 2020. 12. 16. 위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 등과 함께 채권자의 해산 및 청산 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로써 채무자별로 각 13,225,18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2. 30.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사. 채무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20. 8.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채권자가 2020. 8. 1. 채무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들을 복직시키고, 그 기간 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2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불복절차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5. 위 조합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채무자들의 이의신청 요지

채무자들은 정당한 조합활동만을 하였을 뿐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도 행한 바 없으며, 채권자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손해와 채무자들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또한 부존재한다는 점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해산 및 청산 경위, 채무자들의 쟁의행위와 내용, 태양 및 정도, 이에 관한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및 2차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의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무자들의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항목과 범위에 관하여 일부 의문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는 전체 손해액 중 일부로써 채무자별로 각 13,225,189원(총 145,477,07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적어도 위 청구금액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는 보전처분 단계에서 필요한 정도의 소명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관계,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해산 및 청산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태양과 그 정도, 이에 관한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및 2차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0.

판사 정승호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도로명주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455.5862m²

2층 443.7062m²

3층 443.7062m²

4층 443.7062m²

5층 443.7062m²

6층 443.7062m²

7층 443.7062m²

8층 443.7062m²

9층 443.7062m²

10층 443.7062m²

11층 443.7062m²



12층 443.7062m²

13층 443.7062m²

14층 443.7062m²

15층 443.7062m²

16층 443.7062m²

17층 443.7062m²

18층 443.706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0층 10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592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 46138.2m²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46,138.2분의 60.2123

[채무자 김태현 소유]



2. 1동의 건물의 표시

;

[도로명주소]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8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486.3600m²

2층 456.5400m²

3층 456.5400m²

4층 456.5400m²

5층 456.5400m²

6층 456.5400m²

7층 456.5400m²

8층 456.5400m²

9층 456.5400m²

10층 456.5400m²

11층 456.5400m²

12층 456.5400m²

13층 456.5400m²



14층 456.5400m²

15층 456.5400m²

16층 456.5400m²

17층 456.5400m²

18층 152.1800m²

부속건물

제107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하주차장 4663.9100m²

지하1층 지하주차장 4663.9100m²

제108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층 보육시설 242.1610m²

2층 노인정 220.6160m²

제109동 조적조 경사스라브지붕

1층 공중화장실 17.7950m²

제110동 조적조 경사스라브지붕

1층 경비실 14.8818m²

제111동 조적조 경사스라브지붕

1층 경비실, 재활용품창고 60.9168m²

제207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하주차장 3920.3500m²





대지권의비율 : 1, 2. 29,564.2분의 31.6407

[채무자 송인환 소유]

3.

대 167m²

[채무자 유영재 소유]

4.

위 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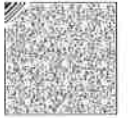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84.69m²

[채무자 유영재 소유]

5. 1동의 건물의 표시





[도로명주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세대) 및 소매점

1층 소매점 74.74m²

1층 계단실 20.07m²

2층 다세대주택(2세대) 159.865m²

3층 다세대주택(2세대) 159.865m²

4층 다세대주택(2세대) 159.865m²

5층 다세대주택(2세대) 159.545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9.4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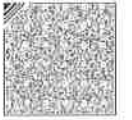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 383.8m²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383.8분의 42.0811



[채무자 장선호 소유]

6. 1동의 건물의 표시

[도로명주소]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다세대주택(계단실,주차장)11.96㎡

2층 다세대주택(2세대) 161.2㎡

3층 다세대주택(2세대) 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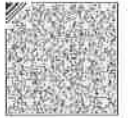
4층 다세대주택(2세대) 161.2㎡

5층 다세대주택(2세대) 16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74.6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 875m²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875분의 54.6875

[채무자 노길현 소유]

7. 1동의 건물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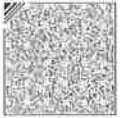
[도로명주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333.8670m²

2층 411.7309m²



3층 411.7309m²

4층 411.7309m²

5층 411.7309m²

6층 411.7309m²

7층 411.7309m²

8층 411.7309m²

9층 411.7309m²

10층 411.7309m²

11층 411.7309m²

12층 411.7309m²

13층 411.7309m²

14층 411.7309m²

15층 411.7309m²

16층 411.7309m²

17층 411.7309m²

18층 411.7309m²

19층 411.7309m²

20층 411.7309m²

21층 214.8562m²

22층 214.856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3층 13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5.579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 42533.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42,533.7분의 48.7743

[채무자 황해원 소유]

8. 1동의 건물의 표시

[도로명주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8층



공동주택(아파트)

- 1층 공동주택(아파트) 306.2216m²
- 2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3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4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5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6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7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8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9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10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11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12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13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14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15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16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17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 18층 공동주택(아파트) 408.4148m²

부속건축물





부20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어린이집
208.1776m²

부202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경로당
122.8653m²

부203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작은도서관
245.7178m²

부204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관리사무소 231.8159m²

부205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1 463.436m²

부206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2 23.4178m²

부207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재활용창고 23.729m²

부208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경비실-1
8.75m²

부209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경비실-2 18m²

부210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1층
지하주차장 20027.4248m²

부21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전기실



255.6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8층 8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7.4304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 33223.8m²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33,223.8분의 51.1775

[채무자 김상원 소유]

9. 1동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건



다세대주택

1층 다세대주택(2가구)162.88m²

2층 다세대주택(2가구)162.44m²

3층 다세대주택(2가구)162.44m²

4층 다세대주택(2가구)162.44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201호

철근콘크리트조

75.89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 415m²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415분의 51.55

[채무자 이성호 소유]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

주택

1층 142.22㎡

2층 143.00㎡

3층 143.00㎡

4층 143.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301호

철근콘크리트조

65.7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5길 11

대 345.5㎡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345.5분의 43.1875

[채무자 홍성복 소유]

11.

대 260m²

[채무자 김동식 소유]

12.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00.24m²

[채무자 김동식 소유]

13. 1동의 건물의 표시

[도로명주소]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 12.48㎡

2층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2세대) 161.52㎡

3층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2세대) 161.52㎡

4층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2세대) 161.52㎡

5층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2세대) 161.5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402호

철근콘크리트조

74.9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 333.5㎡

2. 동 소 463-18

도로 6.3㎡

3. 동 소 463-19

도로 25.1㎡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2. 소유권

3.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333.5분의 41.6875

2. 6.3분의 0.7875

3. 25.1분의 3.1375

[가압류할 지분: 채무자 조양묵 소유 2분의 1 지분 전부]



정본입니다.

2021.04.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주사보 김혜영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